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 12. 5 선고 2022가단12665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인

담당변호사 임경섭, 오소망

피 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중현

변 론 종 결 2023. 11. 7.

판 결 선 고 2023. 12. 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공유수면 점용허가권에 관한 대물변제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주식회사 C에 허가번호 D 공유수면 점용허가권과 관련하여 기장군수로부터 부여받은

공유수면 점용허가권에 대한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1)

이 유

1. 기초 사실

가. 공유수면 점용허가권의 취득

1)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토목공사업, 골재파쇄업 및 골재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C은 2014. 4. 28. 기장군수로부터 부산시 기장군 E 지선 1,112㎡에 관하여 F단지 토사 적출장 설치를 목적으로 하고, 2014. 4. 28.부터 2015. 4. 27.까지를 점용기간으로 하는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허가번호 G)를 받았다가, 2014. 5.경 그 면적만을 1,750㎡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유수면 점용·사용변경허가(허가번호 H)를 받았다.

3) C은 2015. 8.경 점용기간 2015. 8. 18.부터 2016. 4. 28.까지인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허가번호 I)를 다시 받았고, 이후 위 점용기간은 2017. 5. 31.부터 2018. 4. 28.까지로 연장되었다(허가번호 J, 별지 목록 기재 공유수면 점용허가권으로 이하 'J 점용허가권'이라 한다).

나. 공유수면 점용허가권 양도약정과 관련소송

1) 피고는 준설업, 골재채취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C과 피고는 2017. 10. 12.경 피고가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에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C은 K의 위 1억 5,000만 원 반환채무를 보증하되 만일 K이 2017. 12. 30.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피고에게 J 점용허가권을 양도한다는 취지의 약정(이하 '이 사건 양도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K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피고는 2018. 10. 18. C을 상대로 명의변경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가합106592), 위 사건에서 2019. 4. 24. C은 피고에게 J 점용허가권에 관하여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이하 ‘관련사건 판결’이라 한다). C이 관련사건 판결에 항소(부산고등법원 2019나53016), 상고(대법원 2019다287314)하였으나 각 항소기각,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져 관련사건 판결이 2020. 2. 27. 그대로 확정되었다.

4) 한편 그동안 C의 J 점용허가권에 대하여 여러 차례 변경허가가 이루어졌는데, 그 최종 허가번호는 D이다. 원고는 관련사건 판결에 근거해 2020. 4. 29. 기장군수로부터 점용기간을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로 하는 것 이외에는 J 점용허가권과 동일한 내용의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허가번호 L)를 받았고, 이후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을 거쳐 2022. 8. 30.에는 그 점용기간을 2022. 9. 1.부터 2023. 8. 1.까지로 하는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허가번호 M)를 받았다.

다.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 1) 원고는 2015. 6.경까지 C의 대표이사이자 주주였던 사람이다.
- 2) C은 2019. 2. 1. 원고에게 차용금 1억 9,000만 원을 2019. 2.부터 2020. 6.까지 나누어 변제하라는 내용의 미불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
- 3) 원고와 C의 촉탁으로 2019. 3. 2. C이 원고에게 차용금 1억 9,000만 원을 2019. 11. 말까지 나누어 변제한다는 내용의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N 같은 날 작성 증서 2019년 제56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7, 을 제1~12,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 1) 원고는 C에 대하여 2015년경 발생한 주식대금채권을 가진다.
- 2) 이 사건 양도약정은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J 점용허가권을 대물변제로 제공한 것으로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이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약정은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

이와 관련하여 부여받은 공유수면 점용허가권에 대한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피고

- 1)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은 이 사건 양도약정 이후인 2019. 2.경 발생한 것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 2) J 점용허가권은 이미 점용기간이 만료되었고, 피고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공유수면 점용허가권은 행정소송 끝에 취득한 것으로 C과 무관하다.
- 3) 피고는 이 사건 양도약정이 사해행위라는 점을 몰랐다. 피고는 C이 이 사건 양도약정을 이행하지 않자 소송을 통해 공유수면 점용허가권을 취득하였다.

3. 사해행위 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 2) 원고는 C에 대하여 2015년경 발생한 주식대금채권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을 제1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15. 5.경 O, P에게 C의 주식을 매도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달리 원고가 그 무렵 C에 대하여 주식대금채권을 가지게 되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그리고 미불확인서나 이 사건 공정증서로는 2019. 2.경 대여금 채권의 존재가 확인될 뿐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은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양도약정 이전에 발생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사해행위 이후에 발생한 것이라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볼만한 예외적인 사정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 증명이 없다.
- 3) 결국 원고에게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 채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소결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원고의 사해행위 취소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 청구 기각

판사 정왕현

별지

1) 2023. 11. 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변경된 청구취지 2항은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C에게 기장군청이 허가번호 D로 별지 목록 기재 공유수면 점용허가권에 대하여 피고에게 한 공유수면 점용허가권에 관하여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로 되어 있다. 그 의미가 분명하게 파악되지는 아니하나, 이와 같이 선택한다.